

##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인사혁신처장

### 1. 시험일시: 2025. 11. 15. (토), 13:30 ~ 17:30 (1, 2교시)

###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분	시험 시간		비고
1교시 응시자 교육	12:50 ~ 13:29	39분	12:50까지 시험실 입실 소지품 검사, 답안지 배부 등
<b>1교시*</b>	<b>13:30 ~ 15:30</b>	<b>120분</b>	<b>언어논리영역·상황판단영역</b>
휴식시간	15:30 ~ 16:00	30분	16:00까지 시험실 입실
2교시 응시자 교육	16:00 ~ 16:30	30분	소지품 검사, 답안지 배부 등
<b>2교시</b>	<b>16:30 ~ 17:30</b>	<b>60분</b>	<b>자료해석영역</b>

\* 1교시는 2개 과목(언어논리영역, 상황판단영역)이 1개의 문제책으로 합본되어 배부, 시험시간은 120분, 과목별 문제풀이 시간은 구분되지 않음

※ 시험시간 연장자(장애인 편의제공) 시험시간

구분	1.5배 연장자	1.7배 연장자
1교시	13:30~16:30(180분)	13:30~16:55(205분)
2교시	17:00~18:30(90분)	17:25~19:10(105분)

### 3. 시험장소: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장 확인

지역	시험장	지역	시험장
서울	13개	광주	2개
부산	4개	대전	2개
대구	3개		

가. 응시자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은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마이페이지 → 원서제출 내역 → 응시표 출력

나.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제공 신청자는 “[붙임]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응시요령 안내”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응시자 준수사항

####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12:50까지(2교시는 16:0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2:00부터 현관 및 시험실 개방)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 전일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시험장 주변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마. 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스마트워치 및 밴드, 스마트안경,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자.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20분 이후 ~ 시험종료 10분 전)에 교시별 1회에 한 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소지품 검사, 대기시간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차.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과도한 향수 사용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및 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타.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다. 특히 시험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기재)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

가. 제1차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답가안 공개: 2025. 11. 15.(토) 19:10
-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 2025. 11. 15.(토) 19:10 ~ 11. 18.(화) 18:00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시험문제/정답 > 정답 이의제기
- 최종정답 공개: 2025. 11. 24.(월) 18:00

## 6. 가산점 등록 및 제1차시험 점수 공개 등 안내

### [가산점 등록 및 결과 공개 안내]

◆ 제1차시험에서는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가산점만 적용(제1·2차시험 적용)되며, 그 외 자격증 가산점은 제2차시험에 적용됩니다.

가.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시행 전일(2025. 11. 14.)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차시험 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내 “원서접수 → 가산점등록/확인” 메뉴화면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등록 기간: 2025. 11. 15.(토) 17:30 ~ 11. 17.(월) 21:00까지

나. 취업지원(국가보훈부) 가산점은 “가산점등록/확인”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 **의사상자 가산점**의 경우에는 등록 기간 내에 가산점 정보를 입력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 라. 가산점 확인 결과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사전 공개/이의제기**에서 **2025. 12. 2.(화) 09:00 ~ 12. 3.(수) 21:00까지** 공개됩니다.
- 마.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로**,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044-202-3255)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1차시험 시행 전일 (2025. 11. 14.)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 확인: 정부24(www.gov.kr)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
- 바. 시험과목(3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사. **가산점의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시험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 가.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2025. 12. 2.(화) 09:00 ~ 12. 3.(수) 21:00**
- 나. 이의제기 결과 및 답안지 확인\* 기간: **2025. 12. 5.(금) 09:00 ~ 21:00**
  - \* 이의제기 기간 내 **신청자에 한 해**, 답안지 확인 기간 내에 **답안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

## 7.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가.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 2025. 12. 17.(수)**
- 나.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 메시지 서비스(국민비서(구빠), 문자메시지)를 신청한 응시자 중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자가 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통신사정에 따라 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안내(시험장, 응시번호 등 문의) ☎ 1800-6634